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4. 13 선고 2021가단9729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등]

---

## 전 문

원 고 1. 주식회사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윤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3. 16.

판 결 선 고 2022. 4. 13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
가. 파주시 D 잡종지 821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가’부분 162㎡ 지상의 3층 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및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나’부분 162㎡ 지상의 3층 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을 각 철거하고,

나. 파주시 D 잡종지 821㎡ 지상의 건축자재 기타 적치물 일체를 수거하고,

다. 파주시 D 잡종지 821㎡을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의 각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예혁준

별지